

동두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예비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99. 12. 11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99. 12. 20

다. 상정일자 : 제91회 동두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상정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 토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예비심사보고서 채택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99. 2. 8 및 '99. 7. 1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징수 절차가 포함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조례는 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조례로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것을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징수절차가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본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어졌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